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조세행정수속 개선의 평가보고 와 2014년 기업들의 만족도, 봉급,세금,세관 과기업에 지원정책에 대한 뉴스 업데이트

2015년 8월 31일



조세행정 수속의 개선에 대한 평가

Viet Nam 상공회의소(VCCI), 행정수속개선자문협회, 국제재정 조직 (World Bank Group) 과 국세청은 2015년 8월 11일 세미나에 “행정수속개선평가: 2014년 기업들의 만족도” 의 보고를 발표했다.

기업들의 조사과정, 검사 data 처리와 보고 작성의 전과정은 VCCI 의 연구팀으로 전국의 63 성, 도시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그런 연구결과의 일부 관심 깊은 내용들을 고객사들에 참고로 다음 같이 들린다:

정보 접근

조사받은 2개기업이면 1기업은 중앙의 법규 문서, 조세정책 혹은 관련 국가 부, 분야의 안내문서를 쉽게 접근할수 있다고 알려준다.

조세 행정수속 집행의 평가

조사에 참가한 기업의 49%는 조세행정수속 집행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 보지않았다고 알려준다. (예,세금 등록, 신고서).

세무서 간부는 불필요한 정보,서류를 여러 가지 요구하고 해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Complaint의 검사, 사찰 및 해결

아마 매출금이 크면 큰수록 회사는 검사, 사찰을 당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 기업의90%는 검사, 사찰시간이 규정기한과 같다고 생각한다.
- 기업의 26%는 조세 검사, 사찰할때 에 비정식적 비용지급을 해야한다.
- 기업의 32%는 검사, 사찰과정중 세무의이해 및 규정적용에대한 세무서의 간부들이 기업의 불편 쪽으로 생각해준 방향으로 돌린다.
- 기업의13%는 세무서의 검사, 사찰 의 순서에 대한 탄원을 해본적이 있다. 여러 기업들이 Complaint을 하고싶지않는 이유로 (i) 향후의 관계 상 Risk발생에 대한 걱정한다: (32%);(ii) 시간이 걸리겠다는 걱정:(31%).

조세행정 수속의 개선 평가

(앞장의 계속)

조세공무원의 서비스

- 기업수의 53%는 조세공무원들이 예의바른 대화, 적당하고 존중한 태도가 있다고 한다.
- 기업수의 52%는 세금 기재, 결산진행중 조세 공무원의 업무진행과 전문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한다.
- 기업수의 32%는 세무 간부들에 비정상 비용의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조사를 받은 FDI 회사들중엔 FDI의 41% 수가 비 정상 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알려 준다.
- FDI의 48%는 비정상 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차별적 거래를 당한다고 믿는다. 지급해주지 않으면 차별적 거래를 당한다고 하는 회사들중엔 50%수가 서류보충, 설명 요구를 받게되고 약 37%는 조세절차의 진행시간이 연기된 걱정을 하며 15%수는 세무직원들이 서로 접촉과정에 비문명, 예의 바르지 않은 태도가 있다고 알려준다.

조세법규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기업들의 건의

조사에 참가한 기업의 92%는 조세 법규의 상대적인 적극/ 적극적인 전환이 있다고 알려준다.

기업들은 앞으로 조세정책 개정 업무에 대한 다음 기대를 표현한다: 조세행정 각 수속들의 간단화:(86%), 세무 행정기관과 조세행정수속에 대한 각 정보 형식들을 늘려준 필요:(71%).

고객사들은 본 독립적 연구결과의 상세적문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VCCI 와 연락 해주셔도 된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고객사한테 늘 정보 제공 및 지원을 해드리 겠다.

봉급 및 조세에 대한 안내의 업데이트

문서 No. 23/2015/TT-BLĐTBXH 는 봉급에 대한 일부 항목 집행 안내를 해주고 2015년 8월 08일 부터 발효 하며 본 문서의 각 제도들이 2015년 3월 01일 부터 집행된다.

상기 문서중 에 일부 주의 해야할 문제는 다음:

봉급 지급 기한:

- 월급을 받은 근로자는 매월에 한번 혹은 반월에 한번씩 지급을 받고 근무 달중에 바로 지급해준다.
- 월급지급시간을 양측합의로 하고 원중에 고정 시점으로 정해진다.

연근작업시간, 밤근무, 밤근무 연근의 봉급 계산 공식:

- 문서는 구체적 계산공식과 공식의 각기준의 정의를 규정한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관계사들에게 다음 권고를 하고 싶다:

- 새 규정집행위한 봉급지급 시간 및 연근근무 월급계산을 다시 검토를 필요하다.
- 밤 근무시간, 연근시간, 로동자한테 지급해준 연근, 밤근무 급여분등을 반영하는통계 리스트를 작성한다.그 리스트는 지급하는 기업에 보관해서 개인소득세 법의 규정에 면세 받은 소득을 증명해준 세무서의 요구 가 있을때 사용한다

문서 No.92/2015/TT-BTC 는 VAT, 개인소득세와 세무관리에 대한 개정의 일부 내용 안내.

본 문서는 2015년 7월 30일부터 발효하고 2015년부터 개인 소득세 (PIT)계산기에 적용한다.

상기문서중 주의해야할 일부 내용들은 다음:

- 베트남에 와 거주한 외국인,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내국인, 외국에 장기 거주한 베트남인이 국내에 와근무한사람에게 한번 지역을 옮긴 지원금에 대한 PIT를 계산하지 않다.
- PIT부담에 과세소득으로 비의무적인보험과 비축적보험 항목을 계산하지않다. 예,다음 보험상품: 건강보험, 사망기 보험 (환비 있는 사망기 보험 제외)...그런 보험엔 보험가입 자는 보험회사 지급의 보험계약에 합의된 보험금혹은 배상 금외에 보험가입에 축적비용을 받을수가 없다.
- 보험회사가 지급해준 보험계약의 합의내용에 반영.
- PIT부담에 과세소득으로 로동자들을 숙소부터 근무장소 까지 왕복 pickup 차량의 비용항목을 계산하지않다.
- PIT부담에 과세소득으로 개인회사, 개인주인의 1성원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한 투자자금부터 계산하지않다.

조세에 대한 안내 업데이트

(문서No. 92/2015/TT-BTC)의 앞장 계속)

▪ VND으로 과세소득의 바뀜 :

과세의 매출금, 소득은 외화로 받으면 그개인이 거래계정을 열린 은행의 실제 구매환율에 따른 VND으로 수입발생 시점에 바뀌야 한다.

납세자는 베트남에 거래계정을 열리지않는 경우에 외화를 VND으로 수입발생시점에 VIETCOMBANK의 외화구매 환율로 바뀌야한다.

Grant Thornton VietNam(주)는 각회사들이 상기 새로운 규정을 주의해서 과세의 소득을 적당 환율 적용으로 바뀌 준다고 권고하고 싶다.

▪ 일부 경우에 대한 세금결재 신고 원칙은 다음 같다:

거주 개인은 봉급, 수수료가 있고 처음 양력년도중 베트남에 183일이하 거주하지만 베트남에 첫날 도착부터 계속 12개월중 183일 이상 거주인 경우.

- 첫번 세금계산 년: 12개월연속의 충분 계산일부터 늦어도 90일 짜 세금 결산 서류 기재 및 제출을 한다.
- 둘째 세금계산 년: 양력년 말일부터 늦어도 90일에 세금 결산 서류 기재 및 제출을 한다.

▪ 외국거주인은 베트남에 근무계약이 말효하면 출국하기전에 구세청과 세금 겨산을 신고한다.

외국거주인은 베트남에 근무계약이 말효하지만 국세청과 세금 결산수속을 출국하기전에 하지못하면 민사법에 따라 고용조직, 다른 개인 한테 위임을 해줘 규정 처럼 세결산을 대신한데 그조직, 개인이 당사자의 납세해야할 과세수입에 대한 책임으로약속 있다.

그런경우엔 PIT의 결산 서류 제출 기간은 출국자의 날부터 늦어도 45일에 규정한다.

▪ 공제된 세금, 년중 납세금, 임시 납금, 외국에 납세의 증명 증빙:

외국의 법규에 따라 자기 세조직이 납세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고용 회사의 발급된 공제된 세금의 사본 (어떤 계산서No.에 납세의 명기내용)혹은 납세자 서명있는 외국에 납세된 은행증빙의 사진을 제출 할수 있다 .

조세업무 안내에 대한 업데이트

(문서No. 92/2015/TT-BTC), 앞장의 계속)

▪ **개인소득세(PIT)의 대체신 결산진행시 가감 방식**

- 개인한테 대신결산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개인의공제의무와 가감된다.
- 가감후의 경우엔 과세부담이 있으면 소득 지급조직, 개인이 부족된 세금을 충분히 국가금고에 납세해주어야 한다.
- 가감후의 경우엔 잉여 납세금이 있으면 세무기관이 자동적 다음 세금계산기에 납세금에 대한 가감을해 주고 혹은 소득을 지급한 조직, 개인은 세무서에 문서 No.156/2013/TT-BTC 발급의 양식 No. 01/ĐNHT에 따른 국가 금고수금의 활불을 위한 제기문서를 제출 해서 환세를 받는다.

검사 팀의 수수료 와 비용:

HaNoi세무서의 안내 문서No. 42921/CT-HT의 2015 년 6월 30일에 발표를 따르면 다음 :

검사 (Control)팀의 수고료 및 활동비의 지급은 그 성원들이 회사의 생산, 영업활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 법인세 결산시 공제비용으로 계산할수 없다.

폐물, 불량품처리에서 나온 소득과 무기한 은행 이자의이익은 법인세 우대수혜를 받다.

HaNoi세무서의 안내 문서 No. 45014/CT-HT의 2015 년7월 10일에 발표를 따르면 다음 :

1. 회사는 2014년 세무 결산기부터 투자우대 분야의 조건 만족으로 법인세 우대수혜를 받은 경우, 회사가 투자우대 분야에서 소득을 발생하고우대분야의 폐물, 불량 품들을 처리하는 소득항목, 매출, 지급에 직접관련된 환율차, 무기한 은행 이자, 기타 직접적 관련된 소득 항목들도 문서 No.78/2014/TT-BTC의 18조 4항; 문서No. 96/2015/TT-BTC의 10조에 근거하면 법인소득세우대를 수혜받다.
2. 회사의 투자제안은 지역적 우대조건 (공단, 경제구역, 첨단 기술구역들 다 포함)의 만족으로 법인세 우대 수혜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 우대를받은 소득은 우대 지역에 생산,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전부의 소득으로 포함하고 단, 재무부의 문서 No.96/2015/TT-BTC의 2015/06/22일 발급 의 제10조 1항의 a,b,c목들에 반영한 각 소득항목들을 제외 한다.

세관 에대한 안내 업데이트

LICENCE, 허가서 비용은 수입품의 세금계산가치에 합해준다.

각 회사의 세관사찰과정에 LICENCE, 허가 비용은 수입품의 세금계산 가치에 합해준요구를 받아서 납세금 의무가 증가된 결과가 나온다.

상기의 내용안내는 제 14조에 문서 No.39/2015/TT-BTC의 정의 부터 출발로 나온것이다. 즉 다음 :

- Licence 비는 상품구입자는 지혜소유주 한테 간접, 직접적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소유권 이전 혹은 지적소유권 사용을 한다.
- 허가비는 구입자가 지혜소유주 한테 간접, 직접적으로 어떤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공업소유권에 속하는 일부 활동을 할수 있게 한다.

문서 No.39/2015/TT-BTC 는 Licence비, 허가비용을 수입물에 합한 조정을 다음조건 만족으로 안내한다:

1. 구입자는 제4항규정의 수입물에 관련된사용가능을 위한 Licence비, 허가서비, 지적소유권 이전비를 내야하고 이런 문제는 세관가치확정을 하고 있다;
2. Licence 비, 허가서비는 직접, 간접적으로 구입자에서 내주여야한 것이 제6항 규정의 상품매매를위한 한 거래조건으로 되고 그런항목은 허가서발급계약, 지적소유권 이전을 위한 다른 합의, 상품구매계약서에 반영된 세관 가치확정을 하고 있다;

3. 세관가치확정중의 수입물의 결재했던 실제가치 혹은 결재해야 할 가치를 아직 계산 하지못한다.

문서 No. 39/2015/TT-BTC 에도 세관가치에 합한 필요가 없는 다음경우중의 하나로 된다고 안내를 한다. 다음:

- 구매자에서 수입품의 재 생산권 혹은 베트남에 각 예술작품의 Copy 권에 내준 비용들 (예, 수입된 상품 샘플이 그샘플 처럼 정확한 사본을 생산하면 수입품 샘플처럼 생산하기위한 지급금액을 수입품의 재 생산 권으로 생각한다.);
- 구매자에서 수입품을 판매,재분배하는권을 위한 각지급비는 만약 그런 비용을 수입물 매매거래를 위한 한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 .

구입자에서 재 생산권, 수입품의 분배, 판매권을 위한 비용을 결재했던 가치 혹은 결재해야 할 실제가치에 계산 했으면 그수입품의 기치확정할때에 세관가치 부터 배낼수가 없다.

Grant Thornton Viet Nam (주)는 고객사들이 각 서류 와 신고된 수입품의 가치를 재 검토해서 과세 가치계산 를 정확히 보장해준것을 바란다 .

Nghe An성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

Nghe An성 인민위원회는 결정서 No.175/2015/NQ-HĐND 의 2015년7월10일에 Nghe An성 지역에 건축 하고 Brant을 2016-2020년 단계에 발전하면 일부 지원 정책을 결정한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 :

모든 경제분야의 영업 허가서 보유회사 및 Nghe An성에 본사가 있고 Brant 발전요구가 있다. 그중엔 다음 :

- Nghe An성의 주도적 상품 혹은 전략적 상품을 영업하는 회사인 경우 .
 - 상품 Brant 보호등록 허가서, 지리적안내, 공업적 스타일, 국제적 기준에 따른 기준의적용,기술 규정과 관리 시스템 들을 보유한 경우.
- 관련된 기관 과 조직.

Nghe An성의 금고에서 지원 내용과 기준 :

- 기업의 교육진행, 건설에 대한 훈련과 기능교육,상호와 상품의 Brant의 발전, 홍보; Brant 에 관련된 자료편집작업을 한다.
- 지원 기준: 교육자(국내, 외국인)의 교육비용, 통역,번역비, 장소 임대료, 서류비, 음료수 비용등..을 100% 포함한다

- Brant명에 대한 자문, logo설계, 인원의 표시 시스템과 회사의 상호 및 상품의 Brant 발전전략을 만든경우.
 - 지원 기준: 총 비용의 50%금을 지원하지만 한 회사당 1억 동 불과한다.
 - 홍보 각 활동계획자문, marketing, 상품 Brant와 회사 상호 홍보를 Nghe An성, 중앙의 방송, 신문 그리고 큰 국제 거래가 있는 website에 진행한다 .
 - 지원 기준: 총 비용의 50%금을 지원하지만 한 회사당 1억 동 불과한다.
- 분쟁되거나 Brant 위반 경우에 회사의 Brant보호에 지원.
 - 지원 기준: 총 비용의 50%금을 지원하지만 한 회사당 1억 동 불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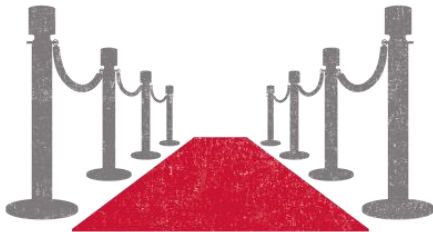
연락처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을 드려서 고객사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한다.(주) Grant Thornton VietNam은 본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 손해를 입은데 책임 지지 않다.

고객사는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Grant Thornton VietNam 의 협조를 받으려면 저희들의 전문가들과 연락 및 합의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상기의 소식통내용등 download 를 하시려면 당사의 다음 Web에 검색하 시면시면 됩니다.

www.gt.com.vn



Ha Noi 사무실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T +84 4 3850 1686
F +84 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am Vinh

한국 고갯사 지원

D 0913 02 4204
E [50_vinhngocpham@gmail.com](mailto:vinhngocpham@gmail.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am Ngoc Long

Tax Director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Nguyen Nhat Le

Senior Tax Manager

D +84 4 3850 1685
E Le.Nguyen@vn.gt.com

Ho Chi Minh City 사무실

28th Floor, Saigon Trade Centre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84 8 3910 9100
F +84 8 3914 3748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Bao Thai

Senior Tax Manager

D +84 8 3910 9236
E Thai.Nguyen@vn.gt.com

© 201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